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2월 14일

- 회부일자 : 1994년 12월 14일

3. 개정이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공단 실시계획 승인 등의 사무가 건설부로부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 승인되어 ('93. 12. 24) '94. 7.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관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민간기업)가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인 배분과 업무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위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골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민간기업)를 지정하여 시행하는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시장, 군수, 출장소장에게 위임.

5. 검토의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공단실시계획 승인이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어 '94. 7. 8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등 법률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지방공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도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생산성을 높여 행정의 간소화, 능률화를 기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에게 위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따로 불임"

· 불임 : 개정조례안 1부.